

의안번호	제 219 호
의 결 연 월 일	2011년 9월 일 (제 303 회)

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1년 9월 9일

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

의안 번호	제 219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1년 9월 9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09년에 차입한 '충북미래관 매입'과 관련된 지방채의 금리가 높아(4.85%) 조기상환으로 건전한 재정을 운용하고자
-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지방채 상환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.

2. 주요내용

□ 지방채상환기금 조성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2010년도말 현재액	2011년도 운용계획			2011년도말 현재액
		수 입	지 출	증 감	
변 경	1,205,672	37,700	1,214,292	△ 1,176,592	29,080
당 초	1,214,790	43,013	0	43,013	1,257,803
증△감	△ 9,118	△ 5,313	1,214,292	△ 1,219,605	△ 1,228,723

□ 지방채상환기금 예산액

(단위 : 천원)

기 금 명	변경예산액	기정액	증 감	비고
지방채상환기금	1,243,372	394,906	848,466	

3. 근거법령 :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

※ 첨부 : 2011년도 지방채상환기금 운용계획 변경안